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 13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 ~ 2023. 11. 1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 규정 및 정비하려는 것임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감염병의 정의(안 제2조)
 - 감염병에 대한 정의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따르도록 신설하여 임의 해석을 방지하였음.
 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 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,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“매년”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 정비를 위해 “매년”을 삭제하여도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 - 방역물품 지원(안 제5조)
 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음.
 - 감염 취약계층 보호(안 제10조)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에 따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.

○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,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